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7일(수) 총 5매	
담당 부서	특별사법경찰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수사팀장 김창호 ☎440-3371 • 식품위생수사팀장 이영미 ☎440-3381 • 담당자 김장용 ☎440-3376 • 담당자 최연주 ☎440-3383 • 담당자 오주연 ☎440-338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특사경, 추석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4건 적발
- 원산지 표시위반, 불법어획물 판매,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적발 -
- 수사 후 검찰에 송치 예정, 행정처분 및 압수물 폐기처분 조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관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추석 명절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선정해 시 위생정책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위반과 불법어획물 판매, 위생관리 미흡,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34건이 적발됐다.

단속 결과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거짓표시 2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16건 ▲꽃게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등 4건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국내산 한우육포를 판매하였으나 비한우로 판별 1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5건* ▲서류 미작성(거짓작성)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등 총 34건이 적발되었다.

* 작업장 및 기계·기구류 위생 불량, 위생해충 방제 및 구제 불량 등

주요 적발사항으로 ㄱ업체는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고, ㄴ업체는 식자재마트에서 불법어획물인 어린꽃게를 보관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ㄷ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된 한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ㄹ업체는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ㄴ업체는 한우육포를 국내산 한우육포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한우여부 검사에서 비한우로 확인됐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ㄷ업체는 작업장 내부에 천장 거미줄, 냉장고 곰팡이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쥐 배설물이 다량 발견되기도 했으며, ㄱ업체는 홍삼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작업일지 및 원료출납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는 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돼지고기와 한우육포 선물세트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수거해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키트로 자체 검정을 실시하고, 한우육포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어획물 판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벌칙사항으로 적발된 곳 12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압수물인 부적합 축산물과 불법어획물은 폐기조치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농·축·수산물의 먹거리 물가가 지난달 8.4%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원산지 표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농·축·수산물을 구매 할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먹거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1

추석명절 농·축·수산물 성수식품 불법행위 단속

* 얼굴, 업소 번호 등 개인정보 모자이크 처리 후 사용 요망



마트 내 수산물 코너 원산지 단속 현장



식자재마트 내 수산물 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품목(적합)

붙임2

추석명절 성수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단속

* 사진설명: 현장단속 관련사진. 사진게재 시 위반업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